

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7. 5. 16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 민 행 정 위 원 회

1. 審査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7년 5월 9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7년 5월 14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74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7. 5. 16) 상정 · 수정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조 성 린)

가. 제정이유

-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이 제정,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·보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와 전진한 시민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확대
-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
-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명시
-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규정
- 자원봉사보험 가입대상 규정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 성 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 략)

5. 討 論 要 旨

- 이 종 환 위원회 수정안 동의

6. 修正案의 要旨

○ 수정이유

- 안 제7조제4항 후단 “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”라는 조문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고, 자원봉사센터가 직접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동 조문을 삭제하고,
- 안 제12조중 “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 및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”라는 조문은 우리 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센터를 직영하는 경우에는 맞지 않는 표현이므로 “자원봉사센터 운영경비”를 “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운영시 그 운영경비”로 수정함.

○ 수정안 본문

제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함.

제7조(운영 등) ④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.

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함.

제12조(지원) 구청장은 제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운영시 그 운영경비 및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한다.

7. 審 査 結 果 : 수정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함)

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종로구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제4항중 “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며,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”를 “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안 제12조중 “자원봉사센터의 운영 경비”를 “제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시 그 운영경비”로 한다.

수 정 안 대 비 표

원	안
제7조(운영 등) ①~③ (생략) ④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야 하며,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	제7조(운영 등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한다.
제12조(지원)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경비 및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한다.	제12조(지원) ----- 제7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센터의 위탁 운영시 그 운영경비 ----- -----